

폐기물관리 규정

제 1 조(목적)

본 규정은 우수정기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, 보관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우수정기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, 일반폐기물에 적용 한다.

제3조(용어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, 폐걸레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.
- ②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내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쓰레기를 말한다.

제4조(준수사항)

- ① 지정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안된다.
- ② 지정폐기물 지정 장소 외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면 안된다.
- ③ 폐기물관리법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면 안된다.
- ④ 사업장 내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한다.
- ⑤ 처리한 폐기물은 올바른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신고한다.

제 5 조(폐기물 수집 및 보관)

- ① 환경관리자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 및 보관 하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.
- ② 환경관리자는 폐기물별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수집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.
- ③ 환경관리자는 폐기물을 반출할 때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여 반출한다.
- ④ 환경관리자는 수시로 폐기물 보관장을 점검하여 폐기물의 유출이나 처리 시기를 확인한다.

제 6 조(폐기물 처리)

- ① 폐기물 처리 시 지정된 업체를 통해 반출하고 반출 차량에서 폐기물이 유출되는지 확인한다.
- ② 폐기물 반출 후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내부 일지를 통해 수량을 기록한다.
- ③ 폐기물 처리 업체 변경 시 절차대로 진행하고 경영진의 허가를 득한다.

제 7 조(기록 및 보존)

폐기물 관리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한국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 및 보존한다.